

# 제도소개

수입신고 절차 · 입증서류 기준 · 대상품목 · 결과유형



# 01

## 제도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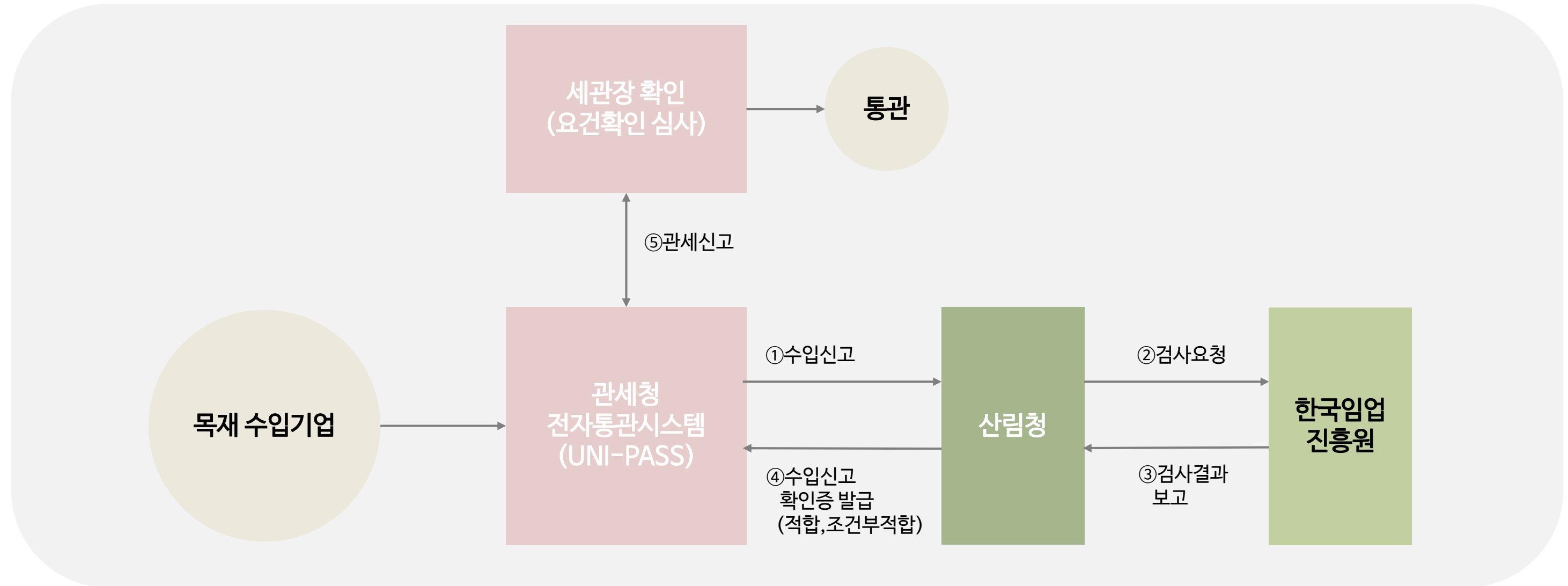
수입신고 절차·입증서류 기준·대상품목·결과유형



### 1.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

목재 생산국에서 불법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[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]에 따라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 (18.10.)

### 수입신고 절차



### 합법성입증서류 기준

- 1) 원산국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
- 2)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
- 3)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
- 4)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### 2. 수입신고 필수 제출서류

- ①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
- ② 합법성 입증서류



## 제도소개

수입신고 절차·입증서류 기준·대상품목·결과유형



### 3.수입신고 대상품목

'HS코드 분류 체계'에 따라 결정

원목(HS 4403), 제재목·방부목재·난연목재·집성재(HS 4407), 합판(HS 4412), 목재펠릿(HS 4401.31)  
단판(HS 4408), 성형목재(HS 4409), 파티클보드(HS 4410), 섬유판(HS 4411), 목재펄프(HS 4701~5)



### 4.수입신고 결과유형

- 적합** 신고내용과 입증서류의내용이 일치하고 합법성 입증에 충실한 경우
- 조건부적합** 누락된 입증서류의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합법성 입증이 필요한 경우 (30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 후 판매유통)
- 부적합** 신고내용과 입증서류의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적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등 합법성 입증이 미비한 경우

